

붙임_‘22년~‘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안내

□ 교육과정 소개

과정명	관련 내용	대상자	운영형태
‘22년~‘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	「화장품법」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	‘22년~‘25년 기간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미이수자	온라인동영상

※ 법적 근거

- 「화장품법」(법률 제20767호, 2025. 8. 1., 일부개정) 제5조제7항~제10항 영업자의 의무 등
- 「화장품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)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
- 「화장품법시행규칙」(총리령 제2060호, 2025. 10. 31., 타법개정)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
-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 제2022-2호, 2022. 1. 14., 일부개정)

□ 운영 교과목

과목명	내용	비고
화장품법의 개요	화장품 법령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·유형,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,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·벌칙, 최근 개정법령 등	
화장품의 품질관리	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, 시판 전/후 품질 관리	
화장품의 안전관리	화장품법의 안전 관련 준수사항 및 안전용기·포장,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,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 및 사용 시 주의사항	
화장품의 표시·광고 준수사항	화장품의 표시기재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등	
화장품의 문서관리	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·기록, 문서·기록의 예시	
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 보고	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	
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	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, 방법 등	

□ 교육 일정 및 참여 절차 안내

- 교육 일정

교육일정	교육시간	교육장소	학습 기간
~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상시 참여	6시간 (교육평가 시간 별도)	·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↓ 교육신청 및 수강 edu.helpcosmetic.or.kr	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마지막날까지 · 1월: 신청일~2월 28일 23시 59분까지(최대 1.5개월) · 2월: 신청일~3월 31일 23시 59분까지(최대 2개월) · 3월: 신청일~3월 31일 23시 59분까지(최대 1개월) ※ 3월의 경우, 신청날로부터 잔여 수강기간 내 수료 필요

- 교육 참여 절차 및 수료 기준

교육 참여 절차	수료기준
①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(edu.helpcosmetic.or.kr)에서 회원가입 ※주의!!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,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, 가입정보는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. ↓ ② 교육신청< 법정과정< 「22년~‘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」 신청 및 온라인교육 수강 ↓ ③ 수료평가 ※수료평가는 모든 차시를 정속으로 80% 이상 이수하였을 시 응시할 수 있으며, 60점 미만 시 학습 기간 내 통과될 때까지 여러 차례 재응시 가능. ↓ ④ 수료증 출력	온라인 교육 80% 이상 교육 이수 +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▶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, 즉시 발급됨 ※온라인교육 신청 내역 및 수료증 발급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

교육비	교육비 납부 방법
80,000원(비과세)	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(edu.helpcosmetic.or.kr)→ 「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」 과정 신청 시 납부

※ 교육비 환불은 교육센터에 공지한 환불 규정에 따라 집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(필독)

- 가. 「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」 과정은 '22년~'25년 기간 중 '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'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입니다.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2026년 3월 31일까지 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나. 법정의무교육은 유료교육으로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 시 접수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길 바랍니다.
- 다. 「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」 과정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 하며 본인이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의 수료,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참여한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공지 합니다.
- 라. 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자 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과태료 50만원 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교육 관련 문의

문의 내용	연락처
법정교육 관련 법령, 대상, 운영 등 전반적인 교육 문의	경영관리실 변은지 과장 eunji@kcia.or.kr
실시간웨비나시스템 접속 오류, 영상 및 음향 송출 확인 교육수료평가 접속 및 평가 오류 등	실시간웨비나시스템 → 시스템 내 챗봇
온라인동영상시스템 오류, 온라인동영상 신청취소 등	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→ 학습지원센터 1:1문의